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	2026.7.13.(월) 조간	배포	2026.7.10.(금)		
담당부서	보험상품분쟁1국 생명보험상품팀	책임자	팀장	송상욱	(02-3145-5212)
		담당자	조사역	구본원	(02-3145-5231)

여행자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의정보 및 주요 분쟁조정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 ◆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는 여행 중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증가
- ☞ 여행자보험의 보장 범위를 파악하여 여행 중 발생한 사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의한 정보 및 주요 분쟁조정사례를 안내

여행자보험 핵심 체크포인트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 발생한 '신체의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및 '휴대품 분실, 배상책임,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입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 전쟁, 고위험 스포츠로 인한 상해·사망과 현금, 의치, 의족, 콘택트렌즈, 안경 등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여행자보험 개요

◆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질병 치료비,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등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 **(소개)**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손해(치료비,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등)를 보상하는 단기보험*입니다.

* 통상 1년 이하의 기간에 가입하는 보험

□ **(보험 가입)** 주로 여행 출발 전 보험회사 홈페이지, 앱 등 온라인 창구에서 여행 정보, 가입자 정보 등을 입력 후 쉽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고지의무)** 피보험자가 본인 관련 주요한 사항(질병, 직업 등)을 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하며,

○ 피보험자가 고지사항을 보험회사에 정확히 알리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중복보상 불가)** 여행자보험은 여러 개를 가입하더라도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되지 않고,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해서 보상됩니다.

* A, B 보험회사에 여행자보험을 가입(가입금액 동일)하고, 해외 병원 치료비 100만원을 각각 청구 시 A, B 보험회사는 각각 50만원씩 지급

□ **(자기부담금)** 보상 시 보험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자기부담금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며,

○ 통상 인보험(치료비 등)은 총 의료비의 일정 비율(예: 30%)로 자기 부담금이 부과되고, 물보험(휴대품 분실 등)은 일정 금액(예: 10만원)만큼 자기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보상 항목별 자기부담금 구조]

◆ (실손의료비) 정률형으로 치료비 발생 시 정해진 비율만큼을 제외하고 보상

◆ (휴대품·배상책임) 정액형으로 손해 발생 시 정해진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보상

2 보장 범위

◆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는 치료비와 재산상 피해를 보장합니다.

<< 보상 가능한 사례 >>



생명·상해 관련



의료비 관련



휴대품 관련



항공기 지연 관련

※ 개별 상품의 약관내용, 구체적인 손해발생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보험)** 여행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통원 치료비 등을 보상합니다.

< 여행자보험의 인보험 보상 범위 >

① 여행 중 발생한 상해 관련

- 여행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해 입·통원 치료를 받거나 사망하는 경우, 신체의 일부 상실 혹은 기능 마비 등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② 여행 중 발생한 질병 관련

- 여행 중 진단·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입·통원 치료를 받거나 사망하는 경우, 장애 분류표상 일정 기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 **(물보험)** 여행 중 발생한 휴대품 손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배상책임, 항공기 수하물 분실 및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 여행자보험의 물보험 보상 범위 >

① 여행 중 발생한 휴대품 손해 관련

- 여행 중 우연하게 발생한 휴대품 파손·도난 등 손해 발생 시 실손 보상
- 보상 가능한 품목에 대해 유의

② 여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 관련

-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하며, 피보험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 제외

③ 항공기 위탁수하물 관련

- 위탁수하물 분실 시 항공사 보상과 별개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추가 보상
- 위탁수하물 지연 시간에 따라 생필품 구매비용 등 보상(사치품, 전자기기 제외)

◆ 피보험자의 고의·자살 등으로 인한 신체 사고, 현금, 무형자산 및 신체보조구 등의 피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보상 불가능한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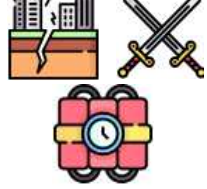
범죄·위법행위



기존 병력



물품 종류 제약



천재지변·전쟁 등

※ 개별 상품의 약관 내용, 구체적인 손해 발생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보험)** 피보험자의 고의, 기존 질병, 전쟁, 고위험 스포츠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여행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인적 손해 범위 >

① 고의·자살 관련

-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상해·사망과 관련한 경우 보상 제외

② 기존 질병 등 관련

- 기존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한방·미용 치료비, 출산과 관련한 경우 보상 제외

③ 전쟁·내란 등 관련

- 전쟁, 내란, 사변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제외

④ 고위험 스포츠 관련

- 암벽·빙벽 등 전문 등반, 모터보트, 스카이다이빙, 번지점프, 패러글라이딩 등 위험 행위의 경우 대부분 보상 제외

□ **(불보험)** 피보험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분실, 현금, 동식물, 무형자산 (데이터 등), 신체보조구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여행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인적 손해 범위 >

① 단순 분실 관련

- 도난이나 파손이 아닌 부주의로 인한 분실의 경우 증빙 서류가 있어도 보상 제외

② 현금 등의 물품 관련

- 현금, 유가증권, 여권, 쿠폰 등의 경우 보상 제외

③ 무형자산 및 신체보조구 관련

- 파일, 메모리카드 내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은 보상 제외
- 의치, 의족, 의수, 콘택트렌즈 등 신체보조장구는 보상 제외

※ 개별 상품의 약관 내용, 가입한 특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상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주요 민원 사례

- **(항공기 지연보상 특약)** 항공기가 일정 시간 이상 지연 또는 결항되어 공항 등에서 발생한 직접손해(비용)*를 보상하며,

* 지연·대체된 항공편을 기다리며 지출한 식비, 숙박비, 교통비, 통신비, 수하물 관련 비용 등이 해당하며, 일정 변경·취소로 인한 수수료, 입장권·티켓 등은 간접손해로 분류하여 미보상

- 지연 시간에 비례하여 정액을 보상하는 **지수형 방식***과,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장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실손형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예시) 지연시간 2시간 초과시 4만원, 4시간 초과시 6만원, 6시간 초과시 8만원 등

보장 방식에 따른 구분

구분	실손형	지수형
보상 기준	여행 중 실제 발생한 손해	객관적 지표 충족시
보상 방식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	정액 지급
보상 한도	실제 발생한 손해 한도 內	약관상 정해진 금액
청구 편의성	증빙서류(영수증·항공권·지연확인서 등) 필요	보험회사가 지연시간 확인 후 보험금 즉시 지급
보험료 수준	상대적 저렴	상대적 비쌈

분쟁조정사례 1

 **(민원 요지)** 피보험자는 화산 분출로 인해 귀국 항공편이 결항되자 타 공항으로 이동하여 다른 항공편을 탑승하였고 이에 따른 재발권 항공권 비용, 공항 간 이동 교통비, 지연 발생 이전에 발생한 간식비에 대한 보험금 청구

- **(약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취소되거나 또는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출발예정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지연·대체된 항공편을 기다리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피보험자는 1시간 30분 뒤 출발하는 타 항공편을 발권하여 귀국하였기에 공항 간 이동 교통비, 지연 발생 이전에 발생한 간식비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

※ 보험회사별로 개별 상품의 약관 내용, 구체적인 사고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사례 2



(민원 요지) 출국 항공편은 지수형, 귀국 항공편은 실손형 항공기 지연보상 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귀국 항공편이 약 5시간 지연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실손형 담보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실제 지출한 금액을 보상한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

- (약관) 지수형은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이 예정보다 2시간 이상 지연·결항되는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보상하며, 실손형은 귀국·경유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결항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지연·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며 실제로 지출한 식음료·편의시설 등의 비용을 보상

→ 본 건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지연된 귀국 항공편을 기다리며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

※ 보험회사별로 개별 상품의 약관 내용, 구체적인 사고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휴대품 손해) 일반적으로 여행 중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에 한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며,

* 통화, 유가증권, 우표, 쿠폰,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이나 원고, 설계서, 도안, 증서, 장부 등 이와 비슷한 것 및 동·식물, 콘택트렌즈 및 안경 등 이와 유사한 신체 보조장구 등은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피보험자의 부주의, 실수 또는 과실로 인한 휴대품 분실 및 손해, 국가·공공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손해*, 기능에 지장이 없는 단순한 외관상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 제외

분쟁조정사례 3



(민원 요지) 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시력 교정용 안경이 파손되어 휴대품 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약관을 근거로 안경은 면책 대상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민원 제기

- (약관) 휴대품손해 특별약관에 따르면 의치, 의족, 콘택트렌즈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는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

→ 시력 교정용 안경은 휴대품이 아닌 신체 보조장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상 면책대상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안내

※ 보험회사별로 개별 상품의 약관내용, 구체적인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사례 4



(민원 요지) 피보험자는 항공 위탁 수하물 운송 중 캐리어 외부에 발생한 스크래치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 (약관)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의 경우 휴대폰 손해 특별약관 중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

→ 피보험자가 제출한 캐리어의 사진만으로는 캐리어의 기능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

※ 보험회사별로 개별 상품의 약관 내용, 구체적인 사고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상책임) 여행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며,

-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 세대 구성원 또는 여행을 동행한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힌 재물의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업무상 배상책임은 별도의 보험 영역에 해당

분쟁조정사례 5



(민원 요지) 타인으로부터 대여하여 사용하던 캐리어가 항공 위탁 수하물 운송 중 파손되어 해외여행 중 배상책임 담보 적용을 요청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상 한도가 낮은 휴대폰 손해 담보로 적용

- (약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음

→ 본 건 사고의 경우 약관상 파손된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기에,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없음을 안내

※ 보험회사별로 개별 상품의 약관 내용, 구체적인 사고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